

[EU] 4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I 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

1. (규정) 식품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

*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23 ('17.03.30), no 2017/624 ('17.03.30), no 2017/626 ('17.03.31), no 2017/627 (17.04.03), no 2017/671 ('17.04.07), no 2017/693 ('17.04.07)

- 농산물의 생산량 증대 및 우수한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은 식품에 잔류될 수 있으나 허용량 이상 섭취할 경우 인체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음
-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중의 잔류허용기준을 유럽위원회가 2005년에 규정함 (유럽위원회 규정 no 396/2006)

- 농약 1일 섭취허용량 ADI(Acceptable Daily Intake)를 이용하여 식품 중 잔류된 농약의 위해성 평가 시행

- ADI를 이용하여 식품에 존재 가능한 최대 잔류 한도 MRL(Maximum Residue Limit)을 설정함

- 2017년 4월에 새로 효력 도입된 유럽위원회 규정들은 여러 농약종류들의 MRL을 수정함 (정확한 새로운 기준은 링크참고):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23 : 아세퀴노실(acequinocyl), 아미트라즈(amtiraz), 쿠마포스(coumaphos), 디푸르페니칸(diflufenican), 플루메퀸(flumequine), 메트리뷰진(metribuzin), 페메트린(permethrin), 피라크로스트로빈(pyraclostrobin) 및 스트렙토마이신(streptomycin)

*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23&from=FR>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24 : 비페나제이트(bifenazate), 다미노자이드(daminozide) 및 톨리플루나이드(tolyfluanid)

*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24&from=FR>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26 : 아세타미프리트(acetamiprid), 사이안트라닐리프롤(cyantraniliprole), 싸이퍼메트린(cypermethrin), 싸이프로디닐(cyprodinil), 디페노코나졸(difenoconazole), 에테폰(ethephon), 플루오피람(fluopyram), 플루트리아폴(flutriafol), 플룩사피록사드(fluxapyroxad), 이마자픽(imazapic), 이마자피르(imazapyr), 람다사이할로트린(lambda-cyhalothrin), 메소트리온(mesotrione), 프로페노포스(profenofos), 프로피코나졸(propiconazole), 피리메타닐(pyrimethanil), 스피로테트라맷(spirotetramat), 테부코나졸(tebuconazole), 트리아조포스(triazophos) 및 트리플로시스트로빈(trifloxystrobin)

*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26&from=FR>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27: 펜피록시메이트(fenpyroximate), 트리아디메놀(triadimenol)

및 트리아디메폰(triadimefon)

*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27&from=FR>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71 : 클로티아니딘(clothianidin) 및 티아메톡삼(thiamethoxam)

* 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71&from=FR>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93 : 비테르탄올(bitertanol), 클로르메퀴트(chlormequat) 및 테부펜피라드(tebufenpyrad)

* 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93&from=FR>

○ 본 규정들은 공보 게시일 20일 후에 발효됨

○ 이러한 농약잔류 허용 기준 준법 검사규정을 2008년에 최초 도입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60 : 2018, 2019 및 2020년도의 농약잔류 허용 기준 준법 검사를 다시 수행할 예정

*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7R0660&from=FR>

2. (검역)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 규정 개정

*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752 ('17.04.28)

○ 유럽위원회 규정 no 10/2011은 식품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대해서 규정함

○ 유럽식품안전청 EFSA (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)은 보고서를 통해 이 규정에 필요한 개정사항과 새롭게 허용 될 수 있는 포장재물질을 지정하고, 다음 물질 사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보고를 함

- FCM (Food contact materials) substance no 1007 (CAS 976-56-7)

- FCM substance n°1016

- FCM substance n°1030

- FCM substance n°1055 (CAS 7695-91-2 ; 58-95-7)

- FCM substance n°1060

- FCM substance n°1062 (CAS 78-10-4 ; 999-97-3)

○ 또한 유럽식품안전청은 식품 및 식수에 들어가있는 nickel 농도 위험성에 대해 보고를 함

- 본 화학물질 전파 테스트에 새로운 제한수치 (Migration limits)를 정함 : 0.02 mg/kg (규정 Annexe II)

○ 동본 규정개정은 2017년 4월 19일에 발효되며, 2018년 4월 19일까지의 유예기간동안 개정 전 규정에 부합하는 포장재 및 제품들은 발매 가능

○ 개정사항

*<http://eur-lex.europa.eu/legal-content/EN/TXT/HTML/?uri=CELEX:32011R0010&from=FR>

MCDA 번호	CAS 번호	재질	첨가제 및 중합체 제조 보조 물질로 사용	단량체 및 미생물 발효로 얻은 고분자로 사용	FRF 적용	제한 및 명시 사항	부합 검사에 대해 참고 요점
'1007	976-56-7	diethyl[[3,5-bis(1,1-dimethylethyl)-4-hydroxyphenyl]methyl]phosphonate	불가능	가능	불가능	-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(PET)를 중합 프로세스로 제조 할시 사용 가능	

						- 최대 사용 가능량은 최종 중합체 무게의 0.02% w/w	
'1016		(methacrylic acid, ethyl acrylate, n-butyl acrylate, methyl methacrylate and butadiene) copolymer in nanoform	가능	불가능	불가능	- 최대 사용 가능량: 가소화 안 된 PVC 10% w/w; 가소화 안 된 PLA 10% w/w - 최종 자재는 실온 및 실온 이하에 사용	
'1030		dimethyldialkyl(C16-C18)ammonium chloride 로 변형된 montmorillonite clay	가능	불가능	불가능	- 건량과 접촉하는 폴리올레핀 (polyolefin)에만 사용 가능: 최대 사용 가능량 12% w/w - 실온 및 실온 이하에서 1-chlorohexadecane 및 1-chlorooctadecane 물질 특성이행의 합이 식품의 0.05% mg/kg 를 넘으면 안됨 - 두께 최대 100nm 나노형태의 판이 함유할 수 있음. 판 방향은 중합체 표면에 평행하고 중합체에 통합되어 있어야 함	
'1055	7695-91-2 58-95-7	α-tocopherol acetate	가능	불가능	불가능	폴리올레핀에 산화 방지제에만 사용 가능	(24)'
'1060		해바라기씨 껍데기	가능	불가능	불가능	- 실온 및 실온 이하 식품과 접촉시 사용 가능 - 껍데기는 섭취 가능 해바라기씨에서 획득해야함 - 첨가제 함유 플라스틱 제조 최대 온도: 240°C	
'1062		97 % tetraethyl orthosilicate (TEOS) (CAS No 78-10-4) 및 3 % hexamethyldisilazane (HMDS) (CAS No 999-97-3)의 혼합물	불가능	가능	불가능	- 재활용 PET 생산에만 사용 가능: 최대 0.12% w/w	

제한 그룹 번호	제한 사항
'(24)	물질 및 가수분해된 생성물들은 허용된 식품 첨가제며 조항 11 (3)과 부합을 확인해야함

3. (영양표시 규정) 식품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규정 개정

* 유럽위원회 규정 no 2017/672 ('17.04.07), no 2017/676 (17.04.10)

- 유럽위원회 규정 no 1924/2006은 식품의 영양표시 및 건강강조표시 (allégation nutritionnelle = nutrition claim)에 대해 규정함
 - 과학적으로 효과가 검증된 건강강조만 규정에 표시되어 식품에 표기가 허용됨
 - 유럽연합 식품 업체들은 유럽식품안전청 EFSA (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)에 새로운 건강강조표시에 대한 연구 신청을 할 수 있음
- 2017년 4월에 두 업체가 락티톨 (lactitol)과 크레아틴 (creatine) 성분의 건강강조표시를

신청함

- 규정 no 2017/676 : “락티톨은 보통 장 기능에 기여를 한다” 표시
- 규정 no 2017/672 : “크레아틴은 노인 근육 기능 유지에 기여를 한다” 표시
- EFSA은 긍정적인 과학적 보고서를 유럽위원회에 제출. 따라서 두 성분을 규정에 포함
- 동본 성분들의 건강강조표시 사용 조건들은 다음과 같음

영양, 물질, 식품 및 식품종류	표시	사용 조건	식품 조건, 사용 제한, 추가사항 및 주의사항	EFSA 공보 번호
락티톨	락티톨은 보통 장 기능을 향상함	락티톨 10g 을 함유한 영양보조 식품에만 사용 가능	어린이 식품에는 사용 금지	2015;13(10):4252'
크레아틴	크레아틴은 노인 (55세 이상) 근육 기능을 유지시켜 줌	55세 이상 및 규칙적 근력운동을 하는 사람 대상	오직 55세 이상 사람 대상 식품에 단어 사용 가능	2016;14(2):4400

II 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검역) 브라질산 육류 및 육류식품 발매 금지

* 프랑스공화국공보 (JORF) no 0080 (17.04.04)

- 브라질에서 부패했거나 식중독균에 오염된 고기를 유통시킨 회사들이 2017년 3월 17일
에 적발됨.
- 그 중 4개의 브라질 소고기 업체와 1개의 꿀 업체에 수출을 금지함:
 - SEARA ALIMENTOS LTDA (SIF 530) : 가금류
 - BRF (SIF1010) : viande de volaille : 가금류
 - JJZ ALIMENTOS (SIF 2156) : 소고기
 - FRIGORIFICO OREGON (SIF 55) : 말고기
 - BREIYER (SIF 3522) : 꿀
- 프랑스공화국공보에 의거 이 업체들이 유통한 고기 및 해당 고기로 생산한 식품들은 발
매 금지됨

III 통관문제사례

* 별첨 참고